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점가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운영 및 공제료 지원〉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5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점가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운영 및 공제료 지원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위상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2.
3. 회부연월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Ⅲ. 검토의견

1. 상점가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운영 및 공제료 지원

개정안은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u>전통시장 화재공제</u>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u>전통시장</u> 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u>전통시장 화재공제</u>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u>화재공제</u> 운영 지원 등) ① ----- <u>시장 및 상점가의</u> ----- ----- ----- <u>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공제</u> ----- -----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전통시장</u>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u>시장 및 상점가의</u> ----- -----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

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나,¹⁾ 전통시장 외 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의 점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개정안에 따라 상점가²⁾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게 되면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에 발생한 화재(37,614건)를 발화장소별로 분류했을 때 ‘판매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962건이었으며, 이 중 상점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135건, 재산피해액은 건당 약 2,264만원 수준으로 나타남.³⁾

다만, 화재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민간 보험 상품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전통 시장 화재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화재공제의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지원 규모, 상점가 상인의 민간 보험 가입 현황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됨에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제 상품의 보상한도 확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fds.go.kr)

대가 필요하고,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효율 체계를 갖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